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19나21804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19나21804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소823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9. 14.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소8237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5. 이후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항소심에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원고와 피고는 2021. 4. 13. 제1차 변론기일과 2021. 5. 11.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인 2021. 6. 11.까지 기일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고는 2021. 7. 6.에 이르러서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이효두